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항이 2013.1.23.자로 개정되었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2015.6.19.자로 일부개정하여 제15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상위법령에 반하거나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하게 다시 기재하는 내용의 규칙을 존속시킬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5. 11. 27. ~ 2015. 12. 17.) 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